

임상실습 협약서

대구시의 영남대학교의료원(이하 “기관” 이라한다)과 대구대학교(이하 “대학” 이라한다)의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은 기관의 기술연마 숙련과정과 현장업무 수행기회를 대구대학교 학생에게 제공하고, 대학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전문인력양성과 기술발전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체결일자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단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3. 대학은 실습일정을 사전에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실습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4. 기관은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5. 현장실습은 기관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
7. 대학은 기관과 협의된 실습비를 현장실습 실시 중 기관명의로 입금한다.
8. 대학은 실습생에 대한 보수, 금품, 숙식 기타 일체를 의료원에 요청하지 않는다.
9. 실습생은 의료원 복무규정 및 부서 근무수칙을 준수 한다.
10. 기관은 실습생이 무단결석(3일) 또는 의료원에 물적·심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실습중지, 취소 등을 조치 할 수 있다.
11. 실습생은 임상(현장)실습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감염, 일반)에 대하여 의료원에 책임을 묻지 않고, 발생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한다.
12.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원에 물적·심적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한다.
13.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관과 대학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5월 20일

기관명 : 영남대학교 의료원

주 소 :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대표자 : 김 종 연



기관명 : 대구 대학교

주 소 : 경북경산시 전량읍 대구대로 201

대표자 : 총상 직무대행 박성규

